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63 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김동아·허성무·임호선

박균택 • 추미애 • 김남근

김영호 • 박정현 • 이정문

김문수 · 허종식 · 한준호

김준혁 • 전재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 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 9조의4 등).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중 "제4항을"을 "제5항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중 "제4항에"를 "제5항에"로 한다.

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"제9조의4제5항을"을 "제9조의4제6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4제 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영업비밀 원본증 명기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4(원본증명기관에 대한	제9조의4(원본증명기관에 대한
시정명령 등) ① ~ ③ (생	시정명령 등) ① ~ ③ (현행과
략)	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
	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
	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
	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	<u>⑥</u>
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	
<u>제4항을</u> 위반하여 원본증명업	제5항을
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	
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	
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	
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	
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	
다.	
<u>⑥</u>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	<u> </u>
기준 및 절차, <u>제4항에</u> 따른 인	<u>제5항에</u>
계 ·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20조(과태료) ①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
는	2천만원	이하의	과태료를
부ā	가한다.		

- 1. · 1의2. (생략)
- 2.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
- ② (생 략)

•
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2. 제9조의4제6항을

② (현행과 같음)